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8월 5일

군산시 조례 제 1884 호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소관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비고
세 무 과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시민납세과	1	납세증명서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2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복지지원과	1	매(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2	개인묘지 설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업축산과	1	농지전용 신고(읍·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	
	2	농지일시 전용(읍·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	
건축경관과	1	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차량등록 사업소	1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전반 (읍·면)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8월 5일

군산시 조례 제 1885 호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
한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이 조례는 「지
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군산시장”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민간위탁 이라” 를 “ “민간위탁” 이라” 로, “시장” 을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시산하기관” 을 “시 산
하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탁기관 이라” 를 “ “수탁기
관” 이라” 로, “시산하기관” 을 “시 산하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호 중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수탁자를” 을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로 하고, 같
은 조 제4호 중 “수탁자와” 를 “수탁기관과” 로 한다.

제3조 중 “관하여는” 을 “관하여” 로, “없는 한 이 조례가” 를 “없으
면 이 조례에서”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을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을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 관리등” 을 “시설관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를 “군산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로, “얻어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얻은 다음” 을 “받은 다음” 으로, “얻은 것” 을 “받은 것” 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을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과 심사항목별 배점 등”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5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5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라” 를 ““위원회” 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하되, 위원장및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 을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 으로, “심사” 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다” 를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에게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및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협약체결등)” 을 “(협약체결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를 “체결하여야” 로 한다.

제10조의2제4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호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한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를 “제1항에 따라 해당” 으로, “통보하되” 를 “통보하고”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각각 “제1항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중 “60일 이내” 를 “10일 이내”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수탁기관은 위원회(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위원회, 별도 위원회가 없을 경우 시정 조정위원회)의 성과평가를 거쳐” 를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u>에 의하여 <u>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u>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u>시 산하기관</u>이 아닌 <u>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u>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u>군산시장</u>-----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u>민간위탁</u>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u>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u>이 아닌 <u>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u>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1. “<u>민간위탁</u>” 이라----- ---- <u>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u>----- <u>시 산하기관</u>----- ----- -----.</p>
<p>2. <u>수탁기관</u>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u>시 산하기관</u>이 아닌 <u>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u>이나 개인을 말한다.</p>	<p>2. “<u>수탁기관</u>” 이라----- ----- <u>시 산하기관</u>----- -----.</p>
<p>3. “<u>재위탁</u>” 이란 <u>민간위탁</u>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u>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수탁자</u>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p>	<p>3. ----- ----- <u>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u>을 -----.</p>
<p>4. “<u>재계약</u>” 이란 <u>민간위탁</u>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u>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u>하는 것을 말한다.</p>	<p>4. ----- ----- <u>수탁기관</u> <u>과</u> ----- -----.</p>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
 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
 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
 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
 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
 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
 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
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단서신
 설 2015.03.02.>

- 1.·2. (생략)

④ (생략)

<신설>

제3조(적용범위) ----- 관하여 --
 ----- 없으
면 이 조례에서 -----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 조
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

 -----.

- 1. ~ 3. (생략)
 - 4. --- 시설관리 등 -----
- ② ----- 각호-----

 -----.

③ -----

 ----- 군산시의회(이하 “의
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
 ----- 받아야 한다. 다만, -
 ----- 받은 다
음 -----
 ----- 받은 것-----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
 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
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생략)
②시장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등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과 심사항목별 배점 등-----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신 설>

<신 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시장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② -----

----- 제5
조에 따른 -----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

- “위원회” 라 -----.

1. ~ 4.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
 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
 회는 자동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그 총수의 3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16.10.
 31.>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
 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
 -----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

 -----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
 ----. -----
 -----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건축
 사 및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 공
 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위원에게는 「군
 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 1. ~ 7. (생략)
- ② (생략)

-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 2. 위원이 심사대상 안전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사대상 안전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

 ----- 체결하여야 -----
 -----.

- 1. ~ 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 4.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증·개축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지휘·감독)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

제10조의2(수탁기관의 의무)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5. 제4호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한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지휘·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
----- 통보하
고 -----.

제13조(이의신청) ① -----

-----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
-----.

② 제1항에 따라 -----

-----.

③ 제1항에 따라 -----
----- 10일 이내-----

④수탁기관은 제1항의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제1항에 -----

-----.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제증명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8월 5일

군산시 조례 제 1886 호

군산시 제증명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군산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와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①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1통	500원	
② 중소 기업자	1통	500원	
③ 광업, 공업, 상업	1통	200원	
④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② 생산실적	1통	300원	
③ 수출실적	1통	300원	
④ 납품실적	1통	300원	
⑤ 건물사용	1통	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⑦ 보세 물건에 관한 관찰(재교부)	1통	300원	
⑧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⑨ 시설 보유 증명	1통	300원	
⑩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 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분배 농지	1통	300원	
②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 문서	1통	300원	지적 관계 제외
·토지 도면	1통	300원	
·건물 도면	1통	300원	
③ 공부 열람			
·기본료	1시간당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④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5,000원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300원	
③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단, 도시계획도
④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1필지	300원	
⑤ 도시계획 증명(부지증명)	1필지	700원	
⑥ 위 ④ 및 ⑤ 이외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1건	200원	
⑦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⑧ 환지 예정지에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00원	
⑨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원	
⑩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원	
⑪ 토지대금 완납 증명	1필지	300원	
⑫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증명	1필지	300원	
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원	(단,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⑭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건	100원	타시군 2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 증명	1통	800원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②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확인서	1주택	800원	<기준년도 1호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호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7.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필지	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필지	300원	
③ 원천징수금 제증명	1필지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필지	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300원	
⑥ 보상금 지불 증명	1통	300원	
⑦ 면세용도 물품 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② 공(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9. 기타 제 증명			
① 수산업에 대한 증명	1통	300원	
② 소방시설 완비 증명	1통	500원	
③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기준년도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필지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1필지	800원	
(인가,허가,신고,신축 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①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수의계약)			
신규	1건	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② 토지등급 성정 심사 청구 신청	1건	500원	
③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원	
④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⑦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⑧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2. 산림 관계			
①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수산 관계			
①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②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공업입지 지정 승인	1건	2,000원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	1,000원	
② 전기 보안 담당자 대형 승인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③ 기계(전기)공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④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원	
⑤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용제대리점	1건	20,000원	
(나) <삭 제>			
(다) 주유소	1건	20,000원	
(라) 용제판매소	1건	10,000원	
⑥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1건	10,000원	
(다) 특수판매소	1건	10,000원	
⑦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	1건	20,000원	
(나) 판매소	1건	10,000원	
5. 건설 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점용문 1건	1/1,000	
②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공사비의 1/1,000	
③ 토석사력의 등 공유수면 산출물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④ 하천(공유수면)점용(물증가명의)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⑤ 하천토석(사력, 하천산출물)채취변경허가	1건	500원	
⑥ 도선장 설치 허가 신청	1건	1,000원	
⑦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건	1,000원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1,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⑧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⑨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⑩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 신청	1건	500원	
⑪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⑫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500원	
⑬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⑭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⑮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⑯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⑰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6. 보건사회 관계			
①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1건	40,000원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③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④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⑤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⑥ 치과 기공소의 인정 신청	1건	10,000원	
⑦ 치과 기공소,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⑧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	1건	20,000원	
⑨ 위생처리업 신고	1건	10,000원	※ ()는
⑩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읍면지역임
⑪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10,000원)	※ ()는
⑫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8,000원 (5,000원)	읍면지역임
⑬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⑭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⑮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⑯ 장난감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⑰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7. 문화관광체육관계			
①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원	
②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 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연습장업 등록	1건	5,000원	
③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④ 공연장의 변경등록	1건	5,000원	
⑤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⑥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⑦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⑧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⑨ 종합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⑩ 일반유원시설업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⑪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30,000원	
⑫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15,000원	
⑬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⑭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원	
⑮ 관광진흥법 제31조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8. 해양수산관계			
①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② 어업면허신청	1건	5,000원	
③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허가 신청	1건	3,000원	
④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허가신청	1건	4,000원	
- 어업권의 분할허가신청	1건	2,500원	
- 어업권의 변경허가신청	1건	3,000원	
⑤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1,000원	
⑥ 근해어업허가신청	1건	4,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⑦ 연안·구획·육상·해수·양식·종묘 생산 어업 허가 신청	1건	2,500원	
- 구획어업허가 신청	1건	4,500원	
- <삭 제>			
- 종묘생산 어업허가 신청	1건	4,000원	
⑧ 수산업가공업등록 신청	1건	3,200원	
⑨ 유어장 지정신청	1건	2,000원	
⑩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원	
⑪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	1건	3,000원	
⑫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1건	2,000원	
⑬ <삭 제>			
⑭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신청	건당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1건	800원	
(나) 어업권 원부의 등록교부 신청	1건	8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1건	8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800원	
⑮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⑯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1,500원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1건	3,000원	
⑰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1건	2,500원	
⑱ 어업허가사항변경신고	1건	1,500원	
⑲ 어업신고	1건	1,500원	
⑳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㉑ 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	2,000원	
㉒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	1건	1,000원	
㉓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3,000원	
㉔ 어업 재개(개시)신고	1건	1,000원	
㉕ 수산동식물의 포획채포금지 해제 허가 신청	1건	3,000원	
㉖ 어업권 지분의 이전·변경등의 등록	1건	1,500원	
㉗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㉘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㉙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㉔내수면어업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1건	9,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	5,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		8,000원	
-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㉕ 내수면어업법 19조			
- 내수면 유해어업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㉖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 낚시어선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 낚시어선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㉗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원	
㉘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	800원	
㉙ 어업면허증 재발급 신청	1건	1,000원	
㉚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 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경)신고	1건	1,000원	
㉛ 면허사항(주소, 성명, 대표자, 선박명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㉜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1건	1,000원	
㉝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원	
㉞ 한시어업 허가 신청	1건	2,000원	
㉟ 한시어업 허가연장 신청	1건	2,000원	
㊱ 시험어업 신청	1건	2,000원	
㊲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㊳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원	
㊴ <삭 제>			
㊵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㊶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㊷ 2중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㊸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2,000원	
㊹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000원	
㊺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㊻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환경 관계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u>군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진 붙임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u></p> <p>② 삭 제</p> <p>③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u>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수 있다.</u></p> <p>④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u>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u>군산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u></p>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8월 5일

군산시 조례 제 1887 호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3.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공익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4. “청년활동”이란 청년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 7.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청년정책의 추진 체계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군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창업 지원
- 다.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 마. 청년의 복지증진
- 바.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 경제·일자리, 주택, 복지, 문화, 보건 등 업무 관련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2.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5. 관내 대학 청년지원 관련 담당자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군산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 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 6. 제9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와 협의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 의욕 고취 및 취업 능력 증진사업
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 하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구직지원금 지원사업
5. 청년 창업 지원사업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의 창업지원) 시장은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환경의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능력개발) ①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 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이 충분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의 복지증진) 시장은 청년의 신체·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의 문화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의 권리보호)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의 날)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8조(포상) 시장은 청년 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및 단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게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2조를 삭제한다.

② 제13조 중 “위원회와 협의체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8월 5일

군산시 조례 제 1888 호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라북도 자원봉사증(이하 봉사증)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③ 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봉사중 소지자에게 가격할인 등 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제14조의2 관련)

시설명	사용대상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에 따른 이용료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군산시 월명체육관 (실내·야외수영장)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이용료
군산 실내 배드민턴장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이용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4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p> <p>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라북도 자원봉사증(이하 봉사증)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p> <p>③ 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봉사증 소지자에게 가격할인 등 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8월 5일

군산시 조례 제 1889 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2조 제2항 관련)

업종	오 수 량 (m ³ /월)	요 금 (원)				
		2018. 1.	2019. 1.	2020. 1.	2021. 1.	2022. 1.
가정용	1-20	335	420	525	655	820
	21-30	475	590	740	925	1,155
	31이상	625	780	975	1,220	1,525
산업용	1m ³ 당	450	560	700	875	1,095

업종	오 수 량 (m ³ /월)	요 금 (원)				
		2018. 1.	2019. 1.	2020. 1.	2022. 1.	2023. 1.
일반용	1-30	485	605	760	950	1,190
	31-50	690	865	1,080	1,350	1,690
	51-100	830	1,035	1,295	1,620	2,025
	101-500	1,115	1,395	1,745	2,185	2,730
	501이상	1,480	1,850	2,310	2,890	3,615
옥탕용	1m ³ 당	415	520	650	815	1,020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8월 5일

군산시 규칙 제 752 호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 관련)

위 반 행 위	지 급 액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1.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u>지방세 부과</u> <u>·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u>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8조(환수) -----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